

자산운용규정시행규칙 ( 2010. 12. 2  
규칙 제482호 )

2011.12.30 개정 제496호      2020. 2.26 개정 제667호  
 2013.11.29 개정 제524호  
 2014. 3.26 개정 제529호  
 2014.12.18 개정 제544호  
 2014.12.31 개정 제550호  
 2015. 2.10 개정 제552호  
 2015. 3.17 개정 제556호  
 2015.12.17 개정 제577호  
 2016. 6. 1 개정 제583호  
 2016.11.17 개정 제592호  
 2016.12.26 개정 제603호  
 2016.12.30 개정 제605호  
 2017. 3.23 개정 제611호  
 2017.12.29 개정 제634호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칙은 「자산운용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필요수익”이라 함은 당해 회계연도 지급준비금 전입액에 제경비를 더한 금액을 말한다.
2. “지급준비금”이라 함은 정관 제43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말 전회원이 탈퇴할 경우를 가정하고 이에 소요되는 부가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으로 설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3. “회원복지사업”이라 함은 회원에 대한 복리후생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투자를 말한다.
4. “합성선물”이라 함은 콜옵션매도와 풋옵션매수 또는 콜옵션매수와 풋옵션매도를 통하여 선물과 같은 효과를 가져 오는 손익구조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5. “유가증권 대여”라 함은 본회 보유 유가증권을 대여약정계약에 의해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6. “유가증권 관리”라 함은 취득한 유가증권의 보관, 원리금 추심, 매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7. “자산운용관련 임직원”이라 함은 사업이사 및 사업이사 소속직원을 말한다.(15.3.17 신설)
8. “자산운용관련 부서”라 함은 사업이사 소속부서를 말한다.(15.3.17 신설)
9. “거래기관”이라 함은 자산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계약관계에 있는 위탁운용사, 거래중개기관, 자산 보관·관리회사, 자문회사, 정보제공 회사 등을 말한다.(15.3.17 신설)

제3조(본점거래의 원칙) 주식, 채권, 금융상품 운용 지급거래는 거래 상대방의 주된 사무소(이하 “본점”이라 한다)와 거래한다. 단, 수입거래 및 회원 급여·대여금 지급, 거래 상대방이 해외에 본점을 둔 경우 및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 2 장 자산배분

제4조(전략적 자산배분) ①투자대상 자산별 목표수익률과 위험, 투자환경 등을 고려한 중장기 전략적 자산배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4.3.26 개정)

②중장기 전략적 자산배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4.3.26 개정)

1. 중장기 국내외 경제 및 투자환경 전망
2. 목표수익률 및 허용위험한도
3. 자산군별 배분 비중 및 허용한도
4. 사업별 운용 전략

③중장기 전략적 자산배분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대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4.3.26 개정)

제5조(자산운용계획) ①자산운용계획은 중장기 자산배분, 시장전망, 당해연도 목표수익 및 자금 수급상황을 종합하여 수립하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연도 자산운용수익이 필요수익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제1항의 자산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2. 자산배분계획(자산군별 허용범위를 포함한다)
3. 수익 목표
4. 재원조달계획

제6조(전술적 자산배분) ①자산운용위원회는 연간 자산운용계획 및 집행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목표달성 및 시장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규정 제8조의 자산운용위원회를 거쳐 자산배분을 전술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전술적 자산배분을 초과하여 자산을 배분하는 경우 이를 차기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 3 장 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 ①자문에 참여한 외부전문가 및 전문기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외부전문가에 대한 수당 지급은 외부전문가수당지급지침에 따른다.(16.6.1 개정)

②사업이사는 외부전문가 지명시 심의안건과 직무상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에 참석하는 외부전문가는 “비밀유지 협약서 <별지 제1호 서식>” 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6.6.1 개정)

③외부전문가 관리 및 지명추천 등 실무는 투자심사팀이 담당한다.(14.12.18 신설)

④간사는 투자심의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심의안건을 해당 위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전까지 배부한다.(16.12.30 신설)

제7조의2(회의록 작성) 자산운용위원회 및 투자심의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하여 해당 위원장 및 위원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소집일시
2. 재적위원 및 출석위원, 기타 관련자의 성명
3. 심의안건 및 심의내용
4. 출석위원 및 기타 관련자의 의견

5. 표결 등의 의결결과(15.12.17 본조 신설)

제 4 장 자산운용

제 1 절 주식 직접운용

제8조(투자대상) ①국내주식 직접운용 투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11.12.30 개정)

1.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이거나 상장 예정인 주권
2.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이거나 상장 예정인 주권
3.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16.12.30 신설)

②해외주식 직접운용의 투자대상은 국내·외에 개설된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 이거나 상장 예정인 주권으로 한다.(11.12.30 신설, 16.12.30 개정)

제9조(투자 제한 주식) ①국내주식을 직접 투자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식(우선주는 보통주의 제한사항 저촉여부를 따른다)은 투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향후 수익성 또는 성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 되는 종목에 대하여는 투자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할 수 있다.(11.12.30, 17.12.29 개정)

1. 3년 연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회사
2. 매입시점 기준 시가총액 500억원 미만 주식(코스닥 250억원 미만)
3. 직전 결산년도의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인 주식(기업분할 후 신규 상장 종목은 예외)(17.12.29 개정)
4. 관리종목 및 화의, 기업회생이 진행 중인 주식

②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는 제1항의 투자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7.12.29 신설)

③해외주식의 투자 제한은 제1항을 준용하되, 세부기준은 투자심의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11.12.30 신설)

제10조(종목별 투자한도) ①국내주식의 종목별 투자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경우 종목별 투자한도 산정에서 제외한다.(11.12.30, 16.12.30 개정)

1. 동일회사가 발행한 보통주 및 우선주 각각에 대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
2. 동일회사가 발행한 보통주 및 우선주의 시가기준 보유잔액 총액이 주식 직접운용금액(보유 현금을 포함한다)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나 성장성이 뛰어난 종목에 대해서는 투자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다.

③해외주식의 종목별 투자한도는 제1항을 준용하되, 세부기준은 투자심의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11.12.30 신설)

제11조(보유종목 위험관리) ①국내주식 보유종목의 손절매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26 본조 전문개정)

1. 매도가능증권은 취득원가 대비 20% 초과 하락이 3영업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10영업일 이내 전량 매도한다.
2. 단기매매증권은 장부가 대비 20% 초과 하락이 3영업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10영업일 이내 전량 매도한다.
3. 제1호와 제2호에서 전량 매도 이후 3개월 내 동일종목을 매입한 경우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매입 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4. 제1호와 제2호의 매도기준에 해당되는 종목은 손절매관리위원회 부의 후 심의·의결을 통해 손절매 기준 적용을 유예할 수 있다.

②각 펀드별 연초이후 수익률이 자산군의 벤치마크 대비 3%p를 5영업일 지속 하회하는 경우에는 리스크관리 팀에 통보하여야 한다.(20.2.26 개정)

제12조(위험회피거래) 주식 직접운용은 위험회피를 위하여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제28조 제2항제1호의 거래만 할 수 있다.

제 2 절 채권직접운용(13.11.29 개정)

제13조(투자대상) 국내채권 투자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11.12.30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채권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채권(이하 “특수채” 라 한다)
3. 다음 각 목의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이하 “금융채” 라 한다)
  -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바.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단기금융회사
  - 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기관
4. 「상법」상의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이하 “회사채” 라 한다)
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자산유동화에 의하여 발행하는 유동화증권(ABS, ABCP, ABL 등)(11.12.30 개정)
6.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발행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이하 “주택저당채권(MBS)”이라 한다) 또는 주택저당증권(이하 “주택저당증권(MBS)”이라 한다)(11.12.30 전문개정)
7. 외국의 정부,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 중앙은행, 또는 정부기관(정부가 투자, 채무의 상환을 보증하는 기관)이 발행하거나 보증하는 외화표시 채권으로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성질을 구비한 것(11.12.30 신설)
8. 기타 원금보장형 및 확정금리형 증권(13.11.29 신설)

②해외채권 투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11.12.30 신설)

1. 외국의 정부,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 중앙은행, 또는 정부기관(정부가 투자, 채무의 상환을 보증하는 기관)이 발행하거나 보증하는 외화표시 채권
2. 세계은행 또는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기구가 발행하거나 보증하는 외화표시 채권
3. 외국의 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 채권으로 제1항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성질을 구비한 것

제14조(투자대상 신용등급) ①채권은 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익성 및 안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BBB- 미만의 채권에 투자할 수 있다.

- ②신용등급은 채권에 부여된 신용등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채권에 관하여 각 신용평가기관별로 부여한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발행기관 또는 준거자산에 부여한 신용등급을 적용한다.
- ③2개 이상의 신용평가 기관으로부터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등급을 받은 2개 기관 중 낮은 등급을 부여한 신용평가 기관의 등급을 유효한 등급으로 본다.
- ④후순위채권은 채무 면제순위에서 일반 채권보다는 뒤지나 우선주, 보통주보다 우선하는 채권으로 신종자본증권 등을 포함한다.(17.3.23 신설)
- ⑤후순위채권의 경우에는 발행회사 신용등급이 AAA이어야 하고, 후순위 채권의 신용등급은 AA-이상 이어야 한다. 다만,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AA등급의 발행회사이거나 A등급의 후순위채권을 매수할 수 있다.(17.3.23 개정)
- ⑥해외채권에 대한 신용등급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신용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로 한다.(17.3.23 개정)
  - 1. Standard & Poor's
  - 2. Moody's Investors Service
  - 3. Fitch Ratings

제15조(투자한도) ①국내채권의 투자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1.12.30, 16.11.17 전문개정)

- 1. <별표 1>에 의한 해당 기업의 자기자본 및 동일기관, 동일회사 발행총액 대비 한도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
- 2. 자기자본 산출은 전년도말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한다.
- ②해외채권은 전항의 투자한도를 준용한다.(11.12.30 신설, 16.11.17 개정)

### 제 3 절 대체투자

제16조(투자대상) 대체투자의 투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기업 지분인수 또는 이와 관련된 투자 및 대여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PEF) 투자
-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산업발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업구조개선사모투자전문회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투자
- 4. 원자재, 농산물 등 재화(Commodity) 및 선박 등에 대한 실물 투자(11.12.30 신설, 13.11.29 개정)
- 5. 부동산 관련 대여 등에 대한 투자(16.12.26 개정)
-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의 집합투자증권 중 부동산 관련 집합투자증권 등의 투자 및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에 대한 투자
- 7. 수익형부동산 등에 대한 직간접 투자
- 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

투자회사에 대한 투자

9. 「민법」 제99조의 부동산을 취득·처분하는 행위 또는 부동산을 사용하여 수익하거나 부가가치를 높이는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투자

10.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투자

11. 헤지펀드에 대한 투자(13.11.29 신설)

제17조(투자한도) ①대체투자(기업투자, 개발투자에 한함) 단위 사업당 투자한도는 직전년도 기준 해당 자산군 운용액 대비 20% 범위 이내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정성과 수익성이 우수한 투자대상에 대한 투자한도의 초과집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심의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3.11.29 본조 전문개정)

제18조(투자제한 적용 특례) 대체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 채권 등에 대해서는 제8조부터 제15조까지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19조(투자의향서 교부) 공제회의 이익에 반하지 않고 사업진행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조건부로 투자의향서, 투자확약서 등을 교부할 수 있다.

제20조(투자자문용역) ①대체투자를 위하여 법률, 재무 및 기타 자문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계약 할 수 있다.(14.12.31 개정)

1. 비밀의 보장 및 시의성
2. 자문 실적
3. 자문 조직 및 전문성
4. 당해 투자사업 자문 적합성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의한 계약 절차는 재무회계규정에 따른다.(14.12.31 개정)

제21조(투자조건) 대체투자의 투자규모, 이익금 회수방법 등 제반 투자조건은 사업전망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이때의 기대수익은 퇴직급여율, 시장 실세금리, 사업위험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제22조(투자기간) 대체투자는 장기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위하여 만기보유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 만기도래 전이라도 처분할 수 있다.

1. 평가이익의 실현
2. 투자의 만기분산
3. 원리금 회수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기타 운용상 필요한 경우

제23조(사후관리) ①대체투자 집행이후 제반 약정사항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험 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투자 원리금 회수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에는 경제성·효율성·합리성 등을 고려하여 채권 회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대체투자 사업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투자실명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투자실명제운영지침에 따른다.(16.6.1 신설)

- 제24조(경영관리자 파견·추천) ①공제회는 투자한 회사의 경영 관리를 위하여 관리자를 파견·추천할 수 있다.  
 ②경영관리자의 파견·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투자회사파견근무인사처리 규칙을 따른다.

제 4 절 위탁운용

제25조(위탁한도) ①위탁운용사별로 배분하는 자금규모는 각 위탁운용 자산(국내·외 주식, 채권, 헤지펀드, 재화투자) 총액의 직전월말 장부가액 20% 또는 4,000억원 이내로 한다.(17.3.23, 20.2.26 개정)

②펀드순자산변동, 자금배분감소 등으로 제1항의 배분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해소하여야 한다.

제25조의2(위탁운용의 투자제한) ①위탁상품 운용시 투자대상의 다양성 및 환매의 제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주식 등에 대해서는 투자대상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채권위탁은 BB- 이상 등급의 편입자산비중이 50%를 초과하여야 한다. 다만, 선순위 담보부 기업대출에 대한 위탁운용은 예외로 한다.

③주관팀은 제1항 내지 제2항 투자계획에 대해 3영업일 전까지 리스크관리팀에 통보하여야 한다.(11.12.30 본조 신설, 15.2.10 본조 전문개정)

제25조의3(해외주식위탁운용 손절매) ①해외주식위탁운용의 펀드 환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액티브유형 펀드의 경우 펀드설정일 이후 누적 수익률이 펀드의 벤치마크 대비 7%p를 5영업일 지속 하회하는 경우 5영업일 이내 환매를 청구한다. 이 경우 설정일 이후 1년 미만 펀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패시브유형 펀드의 경우 펀드설정일 이후 누적 수익률이 펀드의 벤치마크 대비 5%p를 5영업일 지속 하회하는 경우 5영업일 이내 환매를 청구한다. 이 경우 설정일 이후 1년 미만 펀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취득원가 대비 30% 초과 하락이 5영업일 지속되는 경우 5영업일 이내 환매를 청구한다.

②제1항의 환매기준에 해당되는 펀드는 손절매관리위원회 부의 후 심의·의결을 통해 손절매 기준 적용을 유예할 수 있다.

(20.2.26 본조 신설)

제26조(운용기관 선정 및 관리) ①위탁운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성을 갖춘 국내외 운용자를 대상으로 하되, 운용자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되어야 한다.

②위탁운용에 따른 비용은 정액수수료 이외에 운용성과를 반영한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위탁운용 관리를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채권평가회사, 자산보관회사 및 그 밖의 외부전문기관에게 운용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절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상품(13.11.29 개정)

제27조(파생결합증권) ①금리, 주가, 환율, 신용 등과 관련한 기초자산의 가격, 지표 및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되어 미리 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금액 또는 회수금액이 결정되는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②파생결합증권은 내재된 위험을 정확히 인식하여 신중하게 투자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증권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변동금리부채권(Floating Rate Note, FRN)
2. 역변동금리부채권(Inverse FRN)

- 3. 조기상환권부채권(Callable Bond)
- 4. 변제요구권부채권(Putable Bond)
- 5. 그 밖에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증권(13.11.29 본조 개정)

제27조의2(파생결합증권 투자제한) ①파생결합증권 발행사의 신용등급은 A+이상이며, 영업용순자본비율은 200% 이상이어야 한다.

- ②운용 담당 부서는 분기별로 파생결합증권 발행사의 신용등급 및 영업용순자본비율을 점검한다.
- ③보유 자산 발행사의 신용등급 및 영업용순자본비율의 변동으로 제1항에 저축될 경우 파생결합증권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다.

(20.2.26 본조신설)

제27조의3(파생결합증권 투자한도) ①동일회사가 발행한 파생결합증권의 투자원금은 총액의 3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 다만, 발행사 신용등급이 A+인 경우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

- ②보유 자산의 조기상환으로 제1항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0.2.26 본조신설)

제28조(파생상품) ①파생상품 거래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서 행하여 지는 다음 각 목의 금융투자상품지수에 관한 장내파생상품
  - 가. 주가지수 관련 선물·옵션
  - 나. 채권 관련 선물·옵션
  - 다. 통화선물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에 따라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행하여지는 장내파생상품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

②파생상품은 투기적 목적으로 거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파생상품 거래는 투기적 목적으로 보지 아니한다.

- 1. 해당 파생상품의 기초자산 또는 기초자산과 유사관련된 자산을 보유하였거나 장래 보유할 의사가 있는 경우 이의 가격 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파생상품 거래
- 2. 현물, 선물, 합성선물 간 비정상적인 가격 차이를 보일 경우 해당 상품을 동시에 거래하여 무위험수익을 얻고자 하는 파생상품 거래
- 3.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보유한 자산의 가치가 변동될 수 있는 외화표시 자산운용액의 관리를 위하여 행하는 파생상품 거래
- 4. 기초자산 보유를 대체하거나 수익 확보를 위하여 약정금액 또는 투자원금을 최대 손실한도로 하는 파생상품 거래
- 5. 위탁운용사가 위탁운용 계약에 명시한 바에 따라 행하는 파생상품 거래

③제2항제1호 및 제3호 거래시의 포지션 한도는 보유 기초자산 시가총액 범위 내로 한다.

제 6 절 회원복지사업 및 유가증권 대여 등

제29조(회원복지사업) ①회원복지사업 투자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회원 공동이익을 위한 이용시설사업(회관 건립 및 운영을 포함한다)
2. 지방행정 발전에 필요한 사업(용역 수탁사업을 포함한다)
3. 회원을 위한 주택의 건설·공급·임대사업
4. 체육·레저시설, 관광숙박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사업
5. 콘도미니엄 등 회원이용시설 구입 및 지원 사업
6. 기타 회원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회원복지사업을 수익형으로 투자·운영하는 경우에는 회원복지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퇴직급여율 미만으로 투자·운영할 수 있다.

제30조(유가증권 대여거래) ①대여대상 유가증권은 국공회사채 및 주식 등으로 한다.

②유가증권을 대여할 때에는 차용법인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이 차용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대여거래는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한국증권금융 등이 상환이행을 보증하는 거래를 원칙으로 한다.(16.6.1 개정)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차 당사자간에 수수료율 및 담보비율 등의 조건을 협의하여 대여거래를 할 수 있다.

제31조(유가증권 담보) ①담보가액은 대여유가증권 평가액 이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대여시에는 담보물 등에 대한 진위를 확인 후 「유가증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며, 당해 대여유가증권에 대한 담보물과 「대여유가증권 인수증」을 받아야 한다.

제32조(예치대상) 단기자금의 예치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2. 「은행법」에 따른 은행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7.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8.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단기금융회사
10.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예금
11. 기타 이사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

## 제5장 유가증권 관리 및 성과평가

제33조(유가증권 보관) ①유가증권의 관리는 증권예탁원 등 전문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위탁 관리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명식통장 형태의 수익증권과 유가증권의 성질상 보관이 어려울 경우에는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②운용 담당부서장은 유가증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보유목록 및 예치잔고증명서를 첨부한 기금잔고증명서를

작성 또는 발급받아 분기별로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제34조(장부가액) 유가증권 등의 취득은 제반 비용을 포함하여 취득한 금액으로 하고, 주식의 경우 2회 이상 상이한 단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이동평균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35조(기표 및 기장) 유가증권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매매약정서에 의하여 해당 계정으로 기표하고 당해 원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6조(수령절차) 유가증권의 원리금 및 배당금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수령한다.

1. 국공사채 : 법률에 의하여 정부 또는 법인이 발행한 확정 이자부 채권의 발행처 또는 원리금 지급대행기관에서 취급하는 소정양식에 의하여 수령한다.
2. 주식 : 주식발행회사의 결산으로 인한 배당금 지급통지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증권예탁원을 통하여 수령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금융기관에 구좌를 개설하고 온라인 송금으로 배당금을 수령하여야 하며 배당금이 수입되었을 때에는 배당금의 정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7조(유가증권의 출납) 유가증권의 취득대여·처분에 따른 출납 및 관리업무는 운용담당 부서장이 주관한다.

제38조(직인사용 및 관리) ①유가증권 출납 거래에는 인장관리규칙에 따른 인장을 사용한다.

②장기성 자금의 출납시에는 해당부서의 인장과 함께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이사장” 인을 공동 날인한다.

③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인은 해당 부서장이 각각 관리하되 날인부를 비치하여 이용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39조(자산운용 성과평가) ①자산운용성과의 정량적 평가는 전술적 자산배분의 평가와 자산별 평가로 구분한다. 이 경우 전술적 자산배분의 평가는 전략적 배분과 대비하고, 자산별 운용성과 평가는 해당자산 비교지수와 대비하여 평가한다.

②자산운용성과평가에 사용되는 수익률은 시간가중수익률을 원칙으로 하되 자산의 특성, 투자조건에 따라 장부가수익률 등을 사용할 수 있다.

③수익률을 산정하는 경우 실현손익 및 미실현손익을 모두 포함하는 총수익을 대상으로 한다.

④자산운용 성과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

제 6 장 기금운용 내부통제 및 운용점검 (15.3.17 신설)

제40조(전화기 등 통신수단 사용원칙) ①자산운용관련 임직원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화 통화 및 이메일(E-mail)은 공제회의 유선전화기 및 이메일(E-mail) 계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자산운용관련 직원은 공제회 계정 외의 외부 상용메일 계정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산운용관련 담당 임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15.3.17 본조 신설)

제41조(휴대전화 사용 제한) ①주식 직접운용 담당직원은 주식시장 개장 동안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다.

②주식 직접운용 담당직원이 출장업무를 수행하거나, 소속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될 수 있다.

③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사항은 주식 직접운용 담당직원의 소속팀장이 관리한다.(15.3.17 본조 신설)

제42조(녹취 시스템의 운영) ①인사총무팀장은 주식 직접운용 부서에 대한 녹취시스템을 운영한다.

②주식 직접운용 담당직원은 제1항과 관련하여 인사총무팀장으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 ‘전기통신 녹취

및 채록 동의서'의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녹취 기록의 조회(제공)를 요청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 '녹취 조회(제공) 신청서' 작성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그 요청이 법률 또는 규정 등에 근거를 둔 때에는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④인사총무팀장은 녹취의 기록을 조회하거나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사실을 조회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조회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15.3.17 본조 신설)

제43조(서약서 등의 제출) ①자산운용관련 직원은 <별지 제4호 서식> '법규준수 체크리스트'를 매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 소속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자산운용관련 직원은 소속부서에 근무하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기금운용과 관련한 법규준수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 '법규준수 서약서'를 소속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5.3.17 본조 신설)

제44조(부정행위 등의 관련 임직원이 퇴직 후 재취업한 기관에 대한 거래 제한) 자산운용관련 부서는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 자산운용 관련 부정행위와 관련된 임직원이 재취업한 거래기관과 3년의 범위내에서 거래를 제한한다.(15.3.17 본조 신설)

제45조(퇴직 임직원을 채용한 기관에 대한 거래제한) ①자산운용관련 임직원(자산운용관련 부서 외 다른 부서로 이동 후 6개월 미 경과자 포함)이 퇴직 후 자산운용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 재취업한 경우 그 기관과의 새로운 거래 또는 추가 약정을 제한한다.

②제1항의 거래 또는 추가 약정을 제한하는 기간은 재취업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다만, 퇴직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재취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5.3.17 본조 신설)

제46조(거래기관 거래의 제한) 자산운용관련 거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 거래를 제한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공제회에 금전적 손실을 가한 경우
2. 법령, 규정 또는 계약 등을 위반하여 거래의 신뢰성 및 안정성을 해치는 경우
3. 자산운용관련 임직원과 공제회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공모한 경우(15.3.17 본조 신설)

제47조(부적정한 편의수혜 등에 의한 거래제한) ①거래기관 등이 금품수수 및 향응 제공 등 부정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해당 기관에 대하여 위반의 경중에 따라 거래를 제한하여야 한다.

②자산운용관련 임직원이 거래기관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적정한 편의를 제공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 상당액을 해당 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위반사항이 동일한 거래기관에서 3년 이내 2회 적발되는 때에는 가중제한하고, 5년 이내 3회 적발되는 때에는 해당 기관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거래를 제한한다.(15.3.17 본조 신설)

## 부 칙 (2010.12.2. 규칙 제 48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리스크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금융자산운용관리지침 제6조 내지 제10조” 를 “자산운용규정시행규칙 제8조 내지 제12조” 로 한다.

제13조제1호 중 “금융자산운용관리지침 제11조 내지 제13조” 를 “자산운용규정시행규칙 제13조 내지 제15조” 로 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정에서 종전의 「금융자산운용규정」, 종전의 「사업개발규정」, 종전의 「금융자산운용관리지침」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금융자산운용규정」, 종전의 「사업개발규정」, 종전의 「금융자산운용관리지침」에 따라 이뤄진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이뤄진 행위로 본다.

부 칙 (2011.12.30. 규칙 제496호)

이 규칙은 201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11.29. 규칙 제523호)

(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3.26. 규칙 제529호)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12.18. 규칙 제544호)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12.31. 규칙 제550호)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2. 10. 규칙 제552호)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3. 17. 규칙 제556호)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12.17. 규칙 제577호)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6. 1. 규칙 제583호)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11.17. 규칙 제592호)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12.26. 규칙 제603호)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12.30. 규칙 제605호)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3.23. 규칙 제611호)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12.29. 규칙 제634호)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2.26. 규칙 제667호)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16.11.17 신설)

국내채권 직접운용 투자한도표

구 분		투자한도	
		해당기업 자기자본 대비	동일기관 발행총액 대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채권		-	-
특 수 채		100분의 100	-
금 용 채	AAA	100분의 100	-
	AA+ 이하	100분의 50	-
회 사 채 기 타	AAA	100분의 50	-
	AA+ ~ A-	100분의 30	-
	BBB+ 이하	100분의 20	-
후 순 위 채		100분의 20	-
외국기관 등이 발행하는 원화표시 채권		100분의 100	-
ABS, MBS 등 유동화증권		-	100분의 50

※ “외국기관 등” 이라 함은 규칙 제13조 제7호의 외국의 정부,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 중앙은행, 또는 정부기관(정부가 투자, 채무의 상환을 보증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비밀유지확약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상기 본인은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투자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대한지방행정 공제회의 내부정보 및 투자건 등과 관련된 정보자산 포함)에 대한 비밀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서명)

<별지 제2호 서식> (15.3.17 신설)

## 전기통신 녹취 및 채록 동의서

본인은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자산운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숙지하고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대한지방행정공제회가 자산운용과 관련된 정보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소유의 전화 통화내역을 모니터링하고 채록할 수 있으며, 채록된 자료는 1년간 보관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 본인은 채록된 녹취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 그 내용이 조회되거나 외부에 제출될 수 있고, 업무와 관련하여 입증 자료 등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1) 법률에 근거한 경우
  - (2)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 또는 법원의 제출명령에 의한 경우
  - (3) 감사규정 등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내부 규정에 근거한 경우
3. 본인은 이후 본건 동의서 내용과 다른 주장을 하지 않을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 일절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위 동의서의 내용을 빠짐없이 읽고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이의 없이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이사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15.3.17 신설)

## 녹취 조회(제공) 신청서

### I. 신청인

- 성 명 :
- 소 속 :
- 주 소 :

### II. 신청내용

- 법률 또는 제규정 근거 :
- 조회대상 :
- 조회목적 :
- 조회대상기간 :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이사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15.3.17 신설)

## 법규준수 체크리스트

### 자산 운용 · 관리

1. 자산운용관련 직원으로서 본인의 업무를 이해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회원의 재산을 관리하는 수탁자로서 충실의무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개인 투자

2. 자산운용관련 직원은 주식, 파생상품 및 주식관련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금품 수수 및 편의수혜 등

3. 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임직원 행동강령」을 알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정보관리 등

4. 자산운용관련 직원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기밀정보를 업무수행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5. 자산운용관련 직원은 자산운용과 관련된 정보의 부당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화 및 이메일 등의 송·수신은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소유의 통신 수단을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직무외 대외활동 등

6. 자산운용관련 직원은 허가없이 영리·비영리 목적의 기관에 겸직하여 종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기타

7. 자산운용 관련 직원은 직무관련자를 재정보증인으로 하거나 직무관련자의 재정보증인이 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8. 자산운용관련 직원은 실제적 또는 잠재적으로 공제회의 이익과 이해상충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상기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이사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15.3.17 신설)

## 법규준수 서약서

본인은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직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령,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규정 및 업무처리기준 등 충실히 이행할 것을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공제회의 이익보다 더 우선하는 부당한 행위나 거래기관을 선정하거나 평가함에 있어 지위의 남용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본인은 자신이나 다른 자산운용관련 임직원이 관련 규정을 어겼거나 어겼다고 의심되는 경우 또는 직원의 지위나 역할로 인하여 대한지방행정공제회와 거래기관과의 이해상충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 등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고하겠습니다.
3. 본인은 자산운용과 관련된 외부인으로부터 임직원행동강령에서 규정한 범위를 넘는 금품, 향응 등의 편익을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은 관련법령 및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제규정을 위반하는 개인거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이사장 귀하